서울특별시 관광진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서

의안번호

2756

2022. 2. 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2일, 이종환 의원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2.1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이종환 의원)

1. 제안이유

가. 코로나19로 관광사업자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최근 「관광진흥법」개정(2021.8.10.)을 통해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규정됨. 나. 이에 개정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여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 사업자에게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이 2021년 8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것임.

나. 관련 현황

○ 2020년 1월, 전세계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세계 관광수요는 60~8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¹⁾되었고, 2024년에 이르러야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²⁾되고 있음.

¹⁾ OECD, 2020.6.2.

²⁾ Travel Week, 2020.8.20.

- 여행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폭이 두 번째로 큰 업종³⁾으로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만 하더라도 서울 소재 여행사 408개가 폐업⁴⁾하는 등 관광객수 급락과 관련 업계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임.
-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8월 10일부터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확산 등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관광진흥법」(2021.8.10.시행)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동 법의 개정 사유로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 조사 결과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가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로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과 함께 고사 상태에 빠져있는 점과 2020년 여행업 전체 매출이 1조 9,198억원으로 2019년 11조 7,949억원 대비 83.7%가 감소한 것(실직자 4만5천명 추정)으로 추정된 통계를 들어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 서울시는 2020년 9월 15일 서울관광사업발전을 위한 관광진흥 기금을 개설하고 이 중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을 통해 코로나19

³⁾ KB경영연구소

⁴⁾ 전국 997개사 중 서울 소재 여행사 408개사 폐업(행정안전부 지방행정테이터 기준, 2021.8.)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소재 관광 소기업 지원을 실시하였음.

○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가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을 개설하면서 매년 50억원을 투입하여 업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달성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 관광진흥기금 조성 계획(2020년 설치 시)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300억원	300억원	300억원	300억원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비융자사업 추진)	50억원	50억원	50억원	50억원	50억원
서울관광플라자계정	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서울관광플라자 매입비)	← 4년간 적립				1,000억원

-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 관광업계 위기 시 기금을 운용하도록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으로 수 정하여 의결됨(2020.9.15.)
 - '정책금융' 방식의 지원도 제안한 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해당 지원비용을 보증액으로 설정할 경우 최대 20배까지 대부액으로 집행5)할 수 있고, 위기에 빠진 현재의 관광업계를 유의미하게 보호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이고도 전폭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등에 따라 현행 보증기관의 운용배수는 보증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의 20배이며, 이를 총액한도로 하여 보증기관은 그 범위 내에서 보증을 공급할수 있음.

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지원(안 제15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제76조의2(2021.8.10. 개정·시행)를 반영해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위기극복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함.
- 다만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은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경우 향후 법 개정 시 효력 등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경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의견(12-0179, 2012.6.29.)을 제시한 바 있음.
- 동 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관광체육국은 「관광진흥법」제76조의2는 중대한 위기의 범위를 '경영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동 개정안의 수정의견을 개진하였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 제15조의2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원 기준인 "중대한 위기"의 범위를 「관광진흥법」제76조의2에 따라 "경영상"으로 한정하고자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15조의2의 "중대한 위기가"를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로 수정함(안 제15조의2).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Ⅲ.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관광진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2756 제안년월일: 2022년 2월 11일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15조의2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원 기준인 "중대한 위기"의 범위를 「관광진흥법」제76조의2에 따라 "경영상"으로 한정하고자 함.

2.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15조의2의 "중대한 위기가"를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로 수정함(안 제15조의2).

서울특별시 관광진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2 중 "중대한 위기가"를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5조의2(감염병 확산	제15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	등에 따른 지원) 시장
	은 감염병 확산 등으	은 감염병 확산 등으
	로 관광사업자에게	로 관광사업자에게_
	중대한 위기가 발생	경영상 중대한 위기
	한 경우 필요한 지원	가 발생한 경우 필요
	<u>을 할 수 있다.</u>	한 지원을 할 수 있
		<u>다.</u>

서울특별시 관광진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5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 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